

GLOBAL TRENDS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부과와 녹지 늘리기 계획

미국

» 오클라호마시티 대도시 지역 프로젝트 계획(MAPS 3 & 4)

미국

» 미국 주요 도시의 PILOT 제도 비교

미국

» 노스캐롤라이나 지방 소비세 균등화 정책:
Local Sales Tax Pooling and Allocation

프랑스

» 삶의 질과 지속가능 가치 실현을 통한 세수 확대

한국

» '디지털 자산 시대의 조세 정의'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

한국

» 국민주권 시대 주민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부과와 녹지 늘리기 계획

개요

- ▶ 도쿄도(東京都)의 남쪽에 인접한 가나가와현 소속의 정령지정도시인 요코하마(横浜)시는 2009년도부터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의 녹지 보전 및 확대를 위한 '녹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요코하마시는 5개년 사업인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 (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 2024-2028)」에 따라 녹지 보전 및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녹지세 수입 142억 엔(약 1조 4,200억 원)을 활용 중임

취지: 수림지·농지 지키기와 녹지 늘리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 요코하마시는 도시 내 녹지 면적 감소를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 시책으로서는 '수림지(樹林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지구)를 지킨다', '농지를 지킨다', '녹지를 늘린다'라는 3개 분야로 구성된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 수림지와 농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행정 당국으로서는 소유자의 녹지 보유를 지원하고,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요코하마시가 매입하여 시가지의 녹지화도 추진함
- ▶ 2024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 (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수립하여 풍성한 녹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음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도입 과정

- ▶ 녹지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원 마련(세수 확보) 방편으로 요코하마시는 2009년도부터 요코하마 '녹지세(미도리세, みどり税)'를 도입함
- ▶ '녹지세' 실시에 앞서 요코하마시는 1만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심포지엄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왔음
-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요코하마 녹지세' 조례안을 2008년 12월 시의회에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가결되어 2009년도부터 실시함
- ▶ '녹지세'는 개인시민세와 법인시민세 균등화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녹지세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녹지세 자원 마련을 위한 개인과세 방법

- 일본의 주민세(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세라고 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할’과 지역사회의 비용 일부를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소득할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에, 균등할은 주민세에 각각 대응하며, 특히 균등할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요코하마시의 ‘녹지세’는 개인의 경우 <표 1>과 같이 시민세 균등할(분) 연간 3,000엔(약 30,000원)에 900엔(약 9,000원)을 덧붙여 부과하는 초과(超過)과세 형태임. 이에 따라, 현행 녹지세를 포함한 개인시민세 균등할 세액(세율)은 3,900엔(약 39,000원)임¹⁾

[표 1. 요코하마시의 현행 개인시민세 균등할과 녹지세의 세율(연액)]

녹지세 포함 이전 개인시민세 균등할	녹지세 세율 (균등할에 추가)	녹지세 포함 이후 개인시민세 균등할	(참고)가나가와현민세 균등할 세율*
3,000엔	900엔	3,900엔	1,300엔

* 요코하마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개인에게 1,300엔(약 13,000원)의 균등할 주민세(현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에서 부과하는 3,900엔(약 39,000원)과 합산하여 연간 총 5,200엔(약 52,000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부담하게 됨.

한편, 광역자치단체 주민세(현민세)의 표준세율은 1,000엔(약 10,000원)이나 가나가와현은 여기에 300엔(3,000원)의 초과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최종 세액은 1,300엔(약 13,000원)임

자료: 横浜市(2025)「個人の市民税・県民税について」 및 横浜市(2025)「横浜みどり税条例」(제2조 제3항) 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각 자료의 URL은 참고문헌 참조)

녹지세 자원 마련을 위한 법인과세 방법

- 요코하마 녹지세 자원 마련(세수 확보)을 위한 법인과세는 법인시민세 연간 균등할액의 9% 상당액 초과과세를 취하고 있음(2009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
- 세율은 <표 2>와 같이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1) 이 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시민세 균등할이 부과되지 않는 자는 제외함. 나아가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진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년간 임시적으로 개인 주민세 균등할액을 500엔(약 5,000원) 인상하였었음(즉, 이 기간 동안 녹지세 포함 이후 개인시민세 균등할이 4,400엔(약 44,000원)이었음)

[표 2. 요코하마시 녹지세의 법인과세]

법인 구분	요코하마시 녹지세 포함 세율 (연액, 엔(円))		표준세율(연액, 엔(円))	
	종업원 수 50명 이하	종업원 수 50명 초과	종업원 수 50명 이하	종업원 수 50명 초과
자본금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	54,500	130,800	50,000	120,000
1천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	141,700	163,500	130,000	150,000
1억 엔 초과 10억 엔 이하	174,400	436,000	160,000	400,000
10억 엔 초과 50억 엔 이하	446,900	1,907,500	410,000	1,750,000
50억 엔 초과 법인		3,270,000		3,000,000

* 자본금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에는, ①공공법인 및 공익법인 가운데 균등할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독립행정법인의 수익사업은 제외), ②인격이 없는 사단, ③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법인은 제외) 및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법인은 제외), ④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갖지 않는 법인이 포함됨

자료: 横浜市(2025)「横浜みどり税の概要」 및 横浜市(2025)「横浜みどり税条例」(제3조 제1항)를 참조하여 작성(URL은 참고문헌 참조)

-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금 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은 법인일수록 녹지세 부담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요코하마 시내의 여러 행정구(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각 행정구 내의 종업원 수에 따라 구별(區別)로 판정한 균등할액을 합산하여 녹지세를 부과함
- 동일구 내에 여러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사무소의 종업원 수를 합산하여 균등할액을 판정함

녹지세의 세수 규모와 기금적립 및 사용 용도

- 요코하마시 녹지세의 세수 규모는 2024년도(당초 예산 연평균 기준) 약 29억 엔(약 300억 원)으로 개인분이 18억 엔(약 180억 원), 법인분이 11억 엔(약 110억 원)이며, 같은 연도 요코하마시의 개인시민세 수입(예산)은 4,213억 엔(약 4조 2,130억 원), 법인시민세 수입(예산)은 512억 엔(약 5,120억 원)임²⁾
- 개인은 개인시민세 수입의 0.43%(=18/4,213), 법인은 법인시민세 수입의 2.15%(=11/512)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녹지세 부담이 높음
- 요코하마시 녹지세는 세수의 상당액을 녹지 보전 및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요코하마 녹지 기금'에 적립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 녹지세 수입은 수림지(樹林地) 및 농지의 보전, 녹지화 추진·유지를 통한 녹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시민 참가 촉진 관련 사업에 충당하고 있음

2) 녹지세 규모는 横浜市(2025)「横浜みどり税の概要」를 참조하였고, 개인 및 법인시민세 규모는 横浜市(2025)「令和6年度 市税収入」를 참조함

-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 기간인 5개년간(2024~28) 142억 엔(약 1조 4200억 원)의 녹지세 수입을 활용하여 요코하마 시내 삼림을 매입하는 등 녹지 보전을 추진함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의 수립

- 요코하마시는 대도시이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많은 수림지(樹林地)나 농지와 같은 다양한 녹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풍성한 녹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요코하마시 물(水)과 녹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³⁾
- 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중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녹지세’ 제도의 일부를 활용하여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을 마련함
- 요코하마시는 녹지를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나 과제, 본 계획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요코하마시는 ‘녹지 늘리기 계획’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 2024-2028)」을 수립하였음

「요코하마 녹지 늘리기 계획」의 이념과 5개년 목표

- ‘모두가 함께 가꾸는 녹색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 요코하마’가 본 계획의 이념임
- 이러한 이념 아래,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5개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① 녹지 감소를 억제하고 녹지 총량 유지를 지향함
 - ② 지역 특성에 맞는 녹지의 충실한 보전·조성·유지 관리를 통해 녹지의 질을 향상시킴
 - ③ 시민과 녹지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녹지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함

3) 이하는 横浜市 「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について」(URL은 참고문헌 참조)를 참조하고 필자의 보충을 곁들여 작성함

평가 및 시사점

- 주민세 균등화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회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격을 지님
- '녹지세'의 실시는 기업과 개인이 함께 부담하여 지역사회를 가꾸어 간다고 하는 일종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임
- 녹지세는 '편익원리(benefit principle)'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이 조세(녹지세) 부담을 하지만 그에 따른 편익(녹지 증대에 따른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도 있다는 것도 의미함
- 요코하마시의 녹지세와 같이 큰 부담은 아닐지라도 주민에게 편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마을 조성을 하고 그 부담을 주민 스스로 지도록 하여 소속감을 제고하는 정책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의 책임하에 결정한다"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도 부합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

참고문헌

- 横浜市(2025) 「個人の市民税・県民税について」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eki-zei-hoken/zeikin/y-shizei/kojin-shiminzei-kenminzei/kojin-shiminzei-shosai/kojin.html>). 2025년 8월 11일 열람.
- 横浜市(2025) 「令和6年度 市税収入」.
- 横浜市(2025) 「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について」 (<http://www.city.yokohama.lg.jp/kurashi/koseki-zei-hoken/zeikin/y-shizei/midorizei/midorizei.html>). 2025년 8월 12일 열람.
- 横浜市(2025) 「横浜みどり税の概要」 (<http://www.city.yokohama.lg.jp/kurashi/koseki-zei-hoken/zeikin/y-shizei/midorizei/midorizei.html>). 2025년 8월 11일 열람.
- 横浜市(2025) 「横浜みどり税条例」 (<https://cgi.city.yokohama.lg.jp/somu/reiki/reikihonbun/g202RG00001642.html>). 2025년 8월 13일 열람.

국중호 통신원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kook@yokohama-cu.ac.jp